

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정 2004.03.19.
 개정 2011.08.22.
 개정 2012.07.01.
 개정 2016.03.01.
 개정 2019.09.01.
 개정 2020.04.13.
 개정 2022.06.1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단”이라 한다) 법인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은 “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”이라 한다.

제3조(세부업무)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고도화를 위한 기획, 총괄, 조정에 관한 업무
2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3. 산학협력단 혹은 외부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
4.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 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교와 협력연구소의 시설·기자재·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
5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교 안에 설치·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대학교의 교지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7.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
8. 기타 정관에서 정한 단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6조(조직) 단은 정관에서 정한 조직 외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“사업단”, “위원회”, “팀”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의 2조(실무위원회 운영) ① 단의 운영에 관한 실무 논의 및 수행을 위해 “실무위원회”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은 산학협력단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, 스쿨별 위원 배분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교직원의 채용 등) ① 단은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여 정관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준하여 관리한다.

② 삭제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에 대하여 단의 교육, 연구,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급여, 근무조건 등 계약 조건은 수행사업 예산과 지침에 근거하여 단장이 정한다.

제9조(창업보육센터의 운영) 삭제

제10조(연구지원센터의 운영) 삭제

제10의 2조(단의 운영) ① 단은 정관에 정한 행정조직으로 구성되며 조직 특성에 따라 스쿨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 산하 행정조직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별도 지정한다. 단, 연임가능하다.

③ 행정조직은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둘 수 있으며, 개별 조직은 자체규정을 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행정조직은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별도 지정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과 결과) ① 단은 대학교의 회계연도 시작 전과 종료 전에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보고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당해연도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전반 및 단과 산하 행정조직의 사업목표, 조직규모, 예산,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며,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③ 사업결과는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④ 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변경할 경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가와 인센티브제도) ① 단은 연간 사업실적을 평가하며, 이때 각종 사업에 참여한 교수 및 참여 연구인력의 경우 사업참여 결과가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관리부서와 협조한다.

② 단은 필요한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3장 회계관리

제13조(운영재원) 단은 운영재원은 정관 제14조의 운영재원 및 수입으로 한다.

제14조(지출) 단은 정관 제 15조에서 정한 사항을 지출한다.

제15조(예산 및 결산보고) ① 단장은 정관 제 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, 단의 예산 및 결산 결과를 관련법령 및 지침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보고 및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예산 및 결산공고는 연간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,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회계관리) 단장은 단의 회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“사업비 관리 지침”을 정할 수 있으며, 또한 공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